(별지 제1-2호 서식)

타소장치허가기간연장(신청)서

처리기간
1 일

※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

※신청자	기간연장승인번호	
	※타소장치허가일자	
	※타소장치허가번호	
※연장사유	※장치장소: ※장치기간:20 . . .부터 (일간) 20 . . .까지 ※연장기간:20 . . .부터 (일간) 20 . . .까지	
※장치물품내역	※화물관리번호:	

품 명	규 격	수 량	가 격	세 액

담보사항	※담보종류	※담보금액	※담보일자	※담보기간	※담보 연장기간	확 인

관세법 제67조제1항 및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6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타소장치 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위 신청인 (인)

세 관 장 귀하

수수료	없 음

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67조제1항 및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6조제5항에 의하여 (다음 조건부로)타소장치허가기간 연장을 승인함

허가조건:타소장치된 물허가기간 연장된 물품에 대한 제세 및 제반비용 기타 일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

20 . . .

세 관 장 (인)